
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-2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월 23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처분대상 : (주)미디어일육삼육
2. 처분내용 :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(주)미디어일육삼육 :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(사업의 휴지·폐지 등)를 위반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함
4. 처분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(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)
5. 처분일자 : 2013. 1. 23.